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형벌규정 완화 및 손해배상제도 도입〉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49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형벌규정 완화 및 손해배상제도 도입	3
2. 부칙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형벌규정 완화 및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 2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생략)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생략)

<신설>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① -----

-----.

<삭제>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8조¹⁾는 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조합의 이사와 감사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제1항²⁾ 및 제401조제1항³⁾을 준용⁴⁾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중 ①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

1)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누구의 명의로든 조합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지분을 받았을 때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4. 조합의 사업 범위를 벗어나 투기거래를 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였을 때

2)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상법」 등의 준용) ② 조합의 이사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42조 및 제57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조합의 감사에 관하여는 제41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3조제3항,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3, 제413조 및 제414조제3항을 준용한다.

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⁵⁾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행위, ②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따라 형벌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형벌을 기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되,

이에 따른 제재 공백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2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사처벌을 합리화하고 민사적·금전적 책임성은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유사 입법례 상 형벌 규정을 고려하였을 때, 개정안의 형벌 완화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농업협동조합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은 조합 설립 시 부실보고 또는 사실 은폐(현행법 제58조제1호),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행위(현행법 제58조제3호)에 대해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부정한 지분 취득(현행법 제58조제2호), 투기 거래 및 자금유용(현행법 제58조제4호)에 대해서는 타 조합법에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부정한 지분 취득에 대해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명시적인 금지 규정⁸⁾을 두고 있으며,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로 조합등 또는 중앙

6)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벌칙) 조합등과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6조제7항(제107조·제112조 또는 제12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2조제2항에 따른 총회나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제68조(제107조·제112조·제112조의11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손실을 보전 또는 이월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7)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벌칙)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8조제1항(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제2항(제108조, 제113조 또는 제1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1조제4항, 제142조제2항 또는 제169조제6항에 따른 감독기관·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8. 제71조(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또는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6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손실 보전을 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8) 「농업협동조합법」

제74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기 거래 및 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⁹⁾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이를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 제58조제1호, 제3호의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은 완화하되 현행법 제58조제2호, 제4호의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개정안의 개정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전보배상액보다 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손해배상 규정(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유사 입법례의 규정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농업협동조합법」

제170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의 사용 또는 대출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의 처분 또는 이용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6조(벌칙) ①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2.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가 중첩되어 우리 법체계상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¹⁰⁾

특히, 현행법과 개정안은 「상법」상 검사인 등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 즉 통상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억제가 어렵거나 특별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¹¹⁾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¹²⁾과 「수산업협동조합법」¹³⁾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선주상호보험조합법」과 유사한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한다면, 기존의 일반적인 손해배상 규정인 현행법 제43조의 「상법」 준용 규정에 대한 특

10)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649

11)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652

12)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지역농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지구별수협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레이름을 분명히 하고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¹⁴⁾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른 규정과의 관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43조의2의 신설에 따라 약칭 규정의 위치 조정 등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를 신설하여 배상 책임의 주체로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하 “검사인”이라 한다)’라는 약칭 규정을 두고 있음.

약칭은 법률에서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¹⁵⁾이므로, 개정안에 따라 제43조의2가 신설되어 해당 문구가 제58조보다 먼저 등장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문의 간결성과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설되는 안 제43조의2에 약칭 규정을 두고 이어지는 안 제58조제1항 및 신설되는 같은 조 제2항에 그 약칭인 ‘검사인’만을 사용하도록 자구를 정비하는 것이

14)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15)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 232

타당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된 형벌 규정을 보충성·비례성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⁶⁾

1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3.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제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과조치 부재 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형법」 제1조제2항¹⁷⁾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역시 종전의 ‘동기설¹⁸⁾’을 폐기하고 법 개정의 이유를 불문하고 형벌 법규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함.¹⁹⁾

따라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을 경우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완화된 신법이 적용되어, 동일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형이 확정된 자는 구법에 따라 처벌받지만, 수사나 재판이 지연되어 개정법 시행 이후에 판결을 받는 자는 신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됨.

이를 고려하였을 때, 안 부칙 제2조는 형벌 법규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신·구법 적용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개정안 부칙에 신설되는 손해배상책임 규정(안 제43조의2)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적용례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17)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18) 법률의 변경에 관한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형벌 법규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만 「형법」 제1조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가 적용된다는 태도

19) 법제실, 법제 기준과 실제(2024), p. 894

로 보임.

적용례가 없을 경우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위반행위 등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인 「상표법」²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¹⁾등의 부칙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인 한국선수상호보험조합은 신설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적용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27

20) 「상표법」

부 칙 <법률 제20697호, 2025. 1. 21.>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 부터 적용한다.